**물품공급계약서**

(주)XXXX(이하 “구매자”라 함)와 레벤 WWW.LEBEN.BIZ (이하 “공급자”라 함)은 물품의 구매 및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① 본 계약은 “구매자”와 “공급자” 사이에 제품의 구매ᆞ공급ᆞ대금 지급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상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목적으로 한다.

② “구매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 및 개별적인 구입계약(이하 “발주서”이라 함)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 내용】**

① 본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제품은 “공급자”가 공급 가능한 제품 중 “구매자”와 “공급자”가 합의로 정하여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납품을 의뢰한 제품(이하 “계약제품”이라 함)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양 당사자는 본 계약 및 발주서를 성실하게 준수한다.

③ 발주서는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구매할 제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납기, 납품 장소 등 거래내용이 기재된 발주서(주문서 등 포함. 이하 같음)를 교부하고, “공급자”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성립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급자”가 발주서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발주서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④ 제③항의 발주서 및 의사표시는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 전자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전달 할 수 있다.

**제3조 【단가 결정】**

① 계약제품의 단가는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 및 합의하여 결정하고 발주서에 기재 하도록 한다.

② 계약 기간 중 단가 결정 구성조건이 경제 상황 등에 따라 급격히 변동되어 이미 결정된 단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방당사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경우 “구매자” 또는 “공급자”는 단가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제4조 【납품 방법】**

① “공급자”는 “공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발주서에 기재된 수량, 납기일 등을 준수하여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계약제품을 안전하게 인도하여야 하고, “구매자”는 “공급자”가 계약제품을 납품한 경우 이를 인수하고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수령증”이라 함)를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제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공급자”는 계약제품의 운반에 통상 이용되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용기제작(또는 구입)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단, “구매자”가 특별히 지정하는 용기(자동화 Line 전용 등 통상 이용되는 용기가 아닌 것)를 사용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되는 비용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5조 【검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계약제품을 납품할 때마다 계약제품을 검사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계약제품의 검사는 “구매자”와 “공급자”가 합의한 기준에 따라 “공급자”가 실시하며, “공급자”는 개별계약의 정함에 따라 계약제품 납품 시 자체 검사 성적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6조 【부족분, 과오납품 및 불합격품의 처리】**

① 납품된 계약제품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자”의 검사결과 수량의 부족 또는 품질불량 등으로 불합격된 경우에는 “공급자”는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그 부족분 또는 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검사결과 불합격품 또는 과오납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한 기간 내에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품질불량은 1%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 【납품 후 보증】**

① “공급자”는 계약제품이 제6조에 따라 실시된 검사에 합격한 날로부터 2주간 품질을 보증하고, 계약제품에 1%이상의 품질불량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수리 또는 하자 없는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수리 또는 교환되는 제품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구매자” 및 “구매자”의 고객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제품의 하자가 “공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하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제①항 및 제②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8조 【기밀유지】**

① “구매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구매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해지 후 1년까지 제①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조항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 지위 등의 양도 금지】**

“구매자” 및 “공급자”는 상호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 또는 발주서로부터 발생되는 당사자 지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 【계약의 해지ᆞ해제】**

① “구매자”와 “공급자”는 어느 일방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최고과정 없이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어느 일방이 계약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거나 이행하지 않을 것을 통보한 경우

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사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다. 파산 또는 회사의 회생 절차가 법원에 신청된 경우

라.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마.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받아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

② “구매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으로 시정 또는 계약이행을 최고하고 30일이 경과하여도 시정 또는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가.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본 계약 및 부수 협정 또는 발주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나. “공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제품의 공급을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 동안 납품을 지연하고, 반복할 경우

다. “구매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제품의 입고를 거부하거나 대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③ 제①항 및 제②항의 각호에 정한 사유 이외에 “구매자” 또는 “공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체결된 날로부터 [ 1 ]년간으로 한다.

② 제①항의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계약종료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손해 배상】**

① “구매자” 또는 “공급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상대방이 기본계약 또는 발주서를 위반한 경우

나.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이유로 제11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제13조 【분쟁 해결】**

① 본 계약은 국제거래법에 따라 적용되고 해석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구매자”와 “공급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거나, 본 계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례를 고려하여 양 당사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서 해결한다.

③ 제②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매자”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해결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며,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또는 기명)ᆞ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구매자”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대표이사

“공급자”

상호 广州廉星贸易有限公司

사업자번호 91440101MA5CM9A13A

주소 广州白云区黄边北路二矿213创意园C6-106~107

대표이사 廉勇建

연락번호 191-2020-1111

